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개인용 MMF P-1호

-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 2-1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[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다]에 투자하는 행위 가. 채무증권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함) 나. 어음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%로 한다)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 2-1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[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다]에 투자하는 행위 가. 채무증권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[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로 하며,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서예금증서(이하 “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”라 한다)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] 나. 어음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%로 한다) 다.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%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.5%로 한다). 이 경우가 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(신설) 3. 다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</p>
	<p>제33조(이익분배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	<p>제33조(이익분배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<u>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.</u></p>
	<p>제34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.</p>	<p>제34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①수익자는 <u>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</u>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<u>매수하여야</u> 한다.</p>
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구분	변경전	변경후
	부책임: 이호종/양은아	부책임: <u>정상우</u> /양은아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코스닥 벤처기업 소득공제 증권 투자신탁 제1호(주식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	위험등급 산정기준: <u>수익률 변동성(25.77%)</u>
	위험등급: 2등급	위험등급: <u>1등급</u>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2. 변경(예정)일 : 2021년 05월 27일(예정)